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94,477,036	11,834,311
일반회계	363,775,201	10,913,256
특별회계	30,701,835	921,055
기타특별회계	30,701,835	921,05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49,690	25,491
새마을소득사업운영·관리특별회계	0	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41,189	25,236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565,718	16,972
주차장특별회계	422,879	12,686
수질개선특별회계	27,569,610	827,088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452,749	13,58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'세입·세출 예산'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'계속비 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28,952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은 9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.